

위반자, 위반논문 처리

Retraction 논문의 처리

저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학술지 논문 한 편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를 학술지에 알렸고, KCI에 등록된 원문논문은 삭제한 상태이다. 학회 쪽에서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는가?

답변:

논문이 이미 인쇄본으로 출판되고 학술지의 자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을 어떠한 이유(자진 철회 혹은 출판윤리 위반 등)로 데이터베이스에서 retraction의 공식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의편협에서 발행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6장.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에 기술된 <취소논문 공지 절차와 형식>을 따라서 하면 도움이 된다. 논문의 자진 철회나 출판윤리 위반에 의한 철회의 경우 모두 처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취소를 하는 경우 1) 학술지에 취소기사를 일반논문처럼 실어서 목차에 등재하고, 2)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논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은 남겨 둔 상태에서 취소논문의 상단에 “논문취소(retraction)” 또는 “논문취소 공지(Notice of retraction, Retraction notice)”로 표시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취소논문 레코드 처리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취소논문 데이터베이스 처리

논문이 취소된 경우 저자에게는 어떤 벌칙을 주어야 하는가? 취소논문은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며, PMC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먼저 논문취소가 발생한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이나 다른 곳에 표절의 정의와 정책에 대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COPE flowchart에서 기술된 것처럼 저자의 위반 정도가 중대(major)한지 사소(minor)한 것인지 판단은 해당 학술지에서 한다. 저자에 대한 처벌수위의 정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학술지에서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 논문취소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회의에서 결정하여 편집장이 학술지에 공지한다. 논문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 형태로 한다. PMC를 포함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취소논문에 대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고 전에 입력한 취소대상 논문과 서로 연결한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자진취소 논문의 처리

학회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중복출판 논문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고 그 논문을 철회해 준다고 가정할 때, KoreaMed에서도 조건 없이 “저자에 의한 자진철회”로 처리해 줄 수 있는가? 또 과거 Retraction 논문까지 “저자에 의한 Withdrawal”로 변경 처리하여 줄 수 있는가?

답변:

이미 발표된 논문에서 발견된 중복출판 논문의 사후처리 과정이기에 논문취소 사유를 “저자에 의한 자진철회”로 하여 다음에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취소에 대한 공지를 해주면 KoreaMed에서는 취소논문에 대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고 전에 입력한 취소 대상 논문과 서로 연결하여 처리한다. KoreaMed에 이미 등재된 내용을 변경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논문의 취소 처리

해당 국내 학술지가 외국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학술지에 투고 게재된 종설의 저자가 논문취소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내 학술지가 외국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가능하게 되어 저자는 자신이 종설을 작성하면서 참조한 특정 논문과의 중복출판 사실의 표명없이 철회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답변:

이미 발표된 논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된 경우 취소한다 해도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면서 취소 사실이 추가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차출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해도 그 사실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논문을 취소한다면 그 사유를 기술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러므로 해당 종설이 다른 곳에 이미 발표한 종설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만약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종설을 두 번 발표하였다면 나중 것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SCIE에 등재된 학술지의 향후 위상을 위하여 국제 규격에 맞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한다”는 사유를 붙여서 취소절차를 적절하게 취하면 된다. 그렇지만 학술지에 누를 끼쳤으므로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논문을 취소하면서 특정 논문과의 중복출판 사실을 천명하지 않고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복출판 발견 후 출판사에 통보

국문 학술지(A)에 증례를 보고한 후 같은 증례를 외국 학술지(B)에 영어로 중복출판하였다. 이때 A 학술지가 B 학술지에 중복출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문 증례보고를 취소하면서 기관장께 중복출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답변:w

논문이 먼저 출간된 A 학술지에 선취권과 저작권이 있으며, 외국 학술지 게재는 이차출판에 해당한다. A 학술지는 B 학술지에 이미 A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B 학술지에 중복출판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중복출판 사실을 통보받은 외국 학술지는 논문취소를 포함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저자에 대해서는 각 학회의 결정에 따르는데 의편협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임상시험의 보고

IRB 승인이나 임상시험등록을 하는 논문은 원저에 국한하고, 증례보고는 생략해도 되는가?

답변:

IRB심이나 임상시험 등록 대상인지의 연구윤리 관련 범주와 original research 여부인지의 관련 범주가 반드시 일치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IRB심이나 임상시험 등록은 original research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증례보고는 대개 3 예 미만의 경우 IRB 심의를 면제하나, 그 이상이 되면 IRB심의를 요구받는다. 임상시험 등록은 임상시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IRB심이는 (1) 실험적 연구 (2) 관찰적 연구 (3) 개인 정보 이용 연구 -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 포함이 - 이 모두 해당된다.

이와 상관없는 종설연구나 메타 분석 등은 IRB 심의 대상은 아니다. IRB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심의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리는 일은 먼저 저자의 책임이며, 출판인, 편집인, 심사자는 이를 확인할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